

가계용 대출신청 및 약정서

담당 | 결재

※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의4, 제10조의5에 따라 모든 금융기관과의 거래시에는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고 기록하여야 하며 이를 거부하거나 검증이 불가능한 경우, 금융거래가 제한됩니다.

대출자 정보

성명	(외국인의 경우 영문명)		E-mail			
주소						
연락처	자택			H.P		
직장명	직장연락처		우편물	<input type="checkbox"/> 자택	<input type="checkbox"/> 직장	<input type="checkbox"/> 기타
직장주소						

담보제공자 정보 (대출자와 동일 제3자)

성명			E-mail		
주소					
연락처	자택			H.P	

제3조 거래조건

실제소유자여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상 실제소유자란 해당 금융거래의 궁극적 혜택을 보는 개인을 의미하며, 개인 고객의 경우 대출신청인과 동일하다고 간주됩니다.			
대출과목	<input type="checkbox"/> 부동산담보대출 <input type="checkbox"/> 보증서 대출(<input type="checkbox"/> 자동차 <input type="checkbox"/> 전세) <input type="checkbox"/> 기타()	거래구분	<input type="checkbox"/> 개별 <input type="checkbox"/> 한도	대출기한	_____년
		대출용도	<input type="checkbox"/> 구입 <input type="checkbox"/> 대환 <input type="checkbox"/> 기타()		
대출금액	금 _____ 원	대출(희망)일자	_____년 _____월 _____일		
이자율 변경방식	<input type="checkbox"/> 최초 5년 고정후 6개월단위 변동(국고3년) <input type="checkbox"/> 5년단위 변동(국고3년) <input type="checkbox"/> 6개월단위 변동(COFIX) <input type="checkbox"/> 만기고정형 <input type="checkbox"/> 최초 3년 고정후 6개월단위 변동(국고3년)				
대출 지급이자율	COFIX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type="checkbox"/> 신잔액) + (_____)% + (_____)% (상품기본Spread) (최종가감금리) ※ COFIX는 접수전일 최종고시 되어있는 COFIX금리	이자율 적용기한	<input type="checkbox"/> 주택매매 대출 전세 입주자금 대출 : 접수일기준 3개월간	접수일(대출센터 기재) 20	
	국고채3년 + (_____)% + (_____)% (상품기본Spread) (최종가감금리) ※ 국고채3년금리: 대출접수일(작성한 약정서의 접수 및 전산등록 완료일)포함된 주의 직전 4주 영업일수 국고채3년 평균금리		<input type="checkbox"/> 그외 대출 : 접수일기준 2개월간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익영업일까지	국고3년금리(접수일 적용) _____% COFIX금리(접수일 적용) _____%	
우대금리	<input type="checkbox"/> 연소득 3천만원 이상 증빙시 - (_____)% <input type="checkbox"/> 상환방법을 비거치식 선택시 - (_____)% <input type="checkbox"/> 기타우대금리(조건: _____) - (_____)%	<input type="checkbox"/> 장기보험 월납보험료 20만원이상 & 가입 1년 이상 - (_____)% <input type="checkbox"/> 장기보험 월납보험료 40만원이상 & 가입 3년 이상 - (_____)% ※ 위 우대금리의 2개 옵션 중 고객에게 가장 유리한 항목을 우대금리로 반영합니다. (중복반영 불가)			
가산금리	<input type="checkbox"/> 개인신용평점 (_____)%	<input type="checkbox"/> 기타가산(가산조건: _____) (_____)%			
'국고채3년' 'COFIX' 접수시점 기준 적용 관련 특약사항	1. 대출접수일 정의: 본인이 작성한 대출약정서와 제출한 제반서류가 대출센터로 도달하여, 도달된 약정서와 제출서류를 근거로 대출센터에서 전산상 대출 설계 내용을 확인한 날로 합니다. 2. 휴일 약정서 작성 등 접수일의 지연: 약정서 작성 이후 전달소요시간 및 서류의 미비 등으로 대출센터에 접수되기 까지 1-2일이 소요될 수도 있으며, 특히 휴일에 약정서를 작성시 이후의 익영업일이 접수일자가 됨을 확인합니다. 3. 접수일 기준 '국고채3년금리', 'COFIX금리'의 적용 기한 및 기간경과시 '국고채3년금리', 'COFIX금리'의 적용 ① 접수 이후 본인의사 또는 심사과정상의 보완 필요등으로 인하여, 위와 같이 회사가 정하고 본인이 확인한 '적용기한'을 경과하여 대출이 지급되는 경우는, 위에서 약정한 접수시점으로 '국고채3년', 'COFIX'금리가 적용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② ①과 같이 적용기한을 경과한 경우의 '국고채3년금리'는 실제 대출이 지급되는 날이 포함된 주의 직전 4주 영업일수 '국고채3년금리' 평균금리가 적용되고, 'COFIX'금리는 대출전일 최종고시 되어있는 COFIX금리가 적용됨을 확인합니다. ※ 기타 특별히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삼성화재해상보험(주)의 여신거래 기본약관 및 규정에 따르기로 합니다.				

※ 대출이자율은 상품금리와 고객별 우대·가산금리가 포함된 금리이며, 고객이 약정체결 이후 당사 우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우대금리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건 대출기간 연장시 특약항목의 변경이 없는 경우 본 약정에 따른 금리감면·가산은 계속하여 유효하기로 합니다.

본인(대출자) 및 담보제공자는 삼성화재해상보험(이하 '회사'라 한다)와 상기 조건에 따라 여신거래를 함에 있어 '보험사 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을 수령 후,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청취 및 이해했으며, 본 약정에 '보험사 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이 적용됨을 승인하고 각 조항을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또한 인감증명서와 본인사실확인서가 병행 운영됨을 안내받았습니다.

자필확인

신청 및 약정일 20 _____년 _____월 _____일
 대출신청인(대출자) (인) 담보제공자 (인)

이자 및 지연배상금 계산		1년을 365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연체율	해당 시점의 적용이자율 + 가산금리 방식으로 결정 (보험사 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 제2조 4항 적용)				
	* 주택담보대출 또는 약정금액 3천만원 미만 대출인 경우 연체기간 경과시점별 - 연체기간 2개월 이내: 납입지연된 해당 원리금 상환(예정)액에 대해 적용이자율 + ()% - 연체기간 2개월 초과: 총 대출 잔액에 대해 적용이자율 + ()%				
	* 주택담보대출 이외 대출이면서 약정금액 3천만원 이상 대출인 경우 연체기간 경과시점별 - 연체기간 1개월 이내: 납입지연된 해당 원리금 상환(예정)액에 대해 적용이자율 + ()% - 연체기간 1개월 초과: 총 대출 잔액에 대해 적용이자율 + ()%				
연체이자율은 최대 ()%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 '연체가산 이자율은 연체기간에 따라 구분하여 계산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대출실행	<input type="checkbox"/> 대출개시일에 전액 실행 <input type="checkbox"/> 기타()				
상환방법	<input type="checkbox"/> 만기일시 <input type="checkbox"/> 원금균등 <input type="checkbox"/> 원리금균등 <input type="checkbox"/> ()년 거치후 (<input type="checkbox"/> 원금균등 <input type="checkbox"/> 원리금균등) 상환				
한도유지수수료(한도거래시)		대출한도금액의 ()%, ()원 → 대출한도금액 × 한도유지수수료율 = 한도약정수수료			
상환수수료	부과기간/율	<input type="checkbox"/> 대출일로부터 ()개월간 ()% 부과		<input type="checkbox"/> 1년 이후 만기까지 ()%	
	부과방식	상환원금 * 부과율 * 부과기간잔존율 (*부과기간 잔존율 = 잔여부과일/총부과일)			
	일부면제유선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부과기간내 대출금액의 ()% 상환시까지 상환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음 ※ 추가유선 <input type="checkbox"/> 일반형 <input type="checkbox"/> 매년(12개월 단위) 갱신 <input type="checkbox"/> 매년 누적(상품안내서 참고) ※ 대출기간 동안 추가유선 변경은 불가합니다.			
지급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수납계좌	<input type="checkbox"/> 상동 <input type="checkbox"/> 기타(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
납입일자	<input type="checkbox"/> 5일 <input type="checkbox"/> 15일 <input type="checkbox"/> 25일		납입방법	자동이체(R/T수납 포함)	

※ 대출자와 이체계좌 예금주가 다를 경우: 상기 본인계좌로부터 _____의 대출원리금을 납입합니다: _____ (인)

※ 은행 영업시간 마감後 ATM이나 인터넷뱅킹 등을 통한 계좌입금분은 당일 중 상환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2조 이자율의 변경

- 최초 5년(3년) 고정후 6개월단위 변동의 금리 변동은 최초 5년(3년)간은 금리가 고정되며 이후 금리 변동은 매 6개월마다, 해당 변경월 직전 1개월(1일~말일) 국고채3년의 평균 금리와 이전 변경월(최초 변동 시는 집행월)의 직전 1개월(1일~말일) 국고채3년의 평균 금리를 비교하여, 그 차이를 기존 대출 금리에 가감합니다.
- 5년단위 변동(국고3년)의 금리 변동은 최초 5년간은 금리가 고정되며 이후 금리 변동은 매 5년마다, 해당 변경월 직전 1개월(1일~말일) 국고채3년의 평균 금리와 이전 변경월(최초 변동 시는 집행월)의 직전 1개월(1일~말일) 국고채3년의 평균 금리를 비교하여, 그 차이를 기존 대출 금리에 가감합니다.
- 6개월단위 변동(COFIX)의 금리 변동은 대출실행일로부터 매 6개월마다, 해당 변경월 직전 1개월(1일~말일) 은행연합회가 최종 고시한 해당 COFIX 금리와 이전 변경월(최초 변동 시는 집행월) 직전 1개월(1일~말일) 은행연합회가 최종 고시한 해당 COFIX 금리를 비교하여, 그 차이를 기존 대출 금리에 가감합니다.
- 만기고정형은 대출실행 시 결정된 금리를 약정 기간 동안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제3조 지연배상금

- 이자, 분할상환원(리)금을 정해진 기일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는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곧 지연배상금을 지급합니다.
- 대출기간 만료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보험사여신거래 기본약관(가계용) 제7조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는, 그 때부터 대출금 잔액에 대하여 곧 지연배상금을 지급합니다.
-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좌별 대출원금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로서 연체가 발생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는, 회사는 채무자와의 기존 약정에 따를 때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지 아니하였다면 채무이행의 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변제기가 도래하더라도 이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제8조 기타 특약사항(□ 해당란 체크요)

- 본인의 의사 또는 귀책사유로 인해 대출이 취소되는 경우 대출과정의 제반비용은 본인이 부담합니다.
- 본인 신용의 하락으로 인해 MCI 갱신이 불가능한 경우, 기한이익을 상실하며 즉시 변제하도록 합니다.
- 약정체결 이후 본인의 개인신용평점이 회사가 정한 심사기준을 벗어나거나, 신용관리정보 등록자료 확인되는 경우, 회사로부터 대출이 거절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 전세대출의 경우 보증보험사의 심사승인 이후 45일 경과시 재심사하며, 신용도 하락 등에 따라 대출이 거절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 MBS스왑대출 등 유동화 관련 대출 중 경락대출에 한정하여 집행 후 3개월 내 전소유자 및 무권리세입자 퇴거가 완료되지 못할 경우 본 담보대출의 기한이익이 상실됨을 확인합니다.
- 본인은 대출진행과정에서 대출일자, 지급계좌 등 일부 내용을 고객번호와 해당 내용에 대한 녹취를 통해 변경할 수 있음을 동의합니다.

제9조 토지취득담보에 관한 특약 (토지 미등기건에 한함) <토지 미등기 아파트(주택)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본건 대출이 토지 미등기된 아파트(주택)를 담보로 한 경우에는 토지미등기 사유가 해소되어 본인이 당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은 즉시 회사가 제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조치를 지체없이 이행하기로 합니다.

제4조 인지세의 부담

- 약정서의 인지세는 각 50%씩 대출자와 금융기관이 부담합니다.
- 다만, 별도의 약정으로 회사가 전액 부담할 수 있습니다.

제5조 자동이체 제도 이용 등

- 자동이체 등을 이용하여 원리금을 납입할 경우 다음 각항의 사항을 준수하겠으며 이를 게을리 할 경우 대출자에게 지연배상금 등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원금의 일부, 전액상환 및 연체시에는 회사에 직접 납입합니다.
 - 자동납입을 위하여 지정계좌의 예금을 출금함에 있어 각종 예금 약관 또는 약정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금청구서 또는 수표없이 은행의 자동이체 처리절차에 의하여 출금하도록 합니다.
 - 납입기일 현재 예금잔액이 청구금액에 미달하여 출금이 불가능할 경우는 즉시 회사에 납입하기로 합니다.
 - 자동이체 신청을 변경, 해지하고자 할 때는 납입일 30일전까지 자동납입변경 또는 해지신청을 하기로 합니다.

제6조 상계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하였거나, 보험사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 제7조에 의하여 이를 곧 변제해야 할 경우 회사는 대출자의 그 채무와 회사에 대한 제예치금(보험해약 환급금 등) 반환 채권과 상계할 수 있기로 합니다.

제7조 양도, 추심위탁

- 회사는 이 약정서에 의한 대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자산인수회사 등에 양도, 유동화할 수 있습니다.
- 본인의 대출채무가 연체 등의 사유로 부실화될 경우 회사는 신용정보회사 등에 추심업무를 위탁하거나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자산인수회사나 보증보험사 등에 양도 또는 유동화할 수 있습니다.

위 특약사항 제9조에 동의함 본인 _____ (인)

제10조 조건부 취급대출에 관한 특약

본건 대출은 조건부로 취급되며 조건 미이행시 기한이익이 상실됨을 확인합니다.

구분	<input type="checkbox"/> 주택 처분조건부 <input type="checkbox"/> 기존 주담대 전액 즉시상환조건부 <input type="checkbox"/> 기타		
처분대상	<input type="checkbox"/> 처분예정 주택소재지:		처분기한
상환대상	<input type="checkbox"/> 금융기관:		상환기한
	<input type="checkbox"/> 담보 소재지:		
위 특약사항 제10조에 동의합니다.			본인 (인)
대출금 수령권한 위임시	피위임인	생년월일/성별구분 (- □*□□□□□)	관계
	사업자번호		
피위임인에게 상기 약정에 의한 대출금 수령권한을 위임합니다.			
현금수령시	수령일자	수령인	(인)
담보물현황	주소		
	<input type="checkbox"/> 임대사실 없음 <input type="checkbox"/> 임대사실 있음(세대 만원)		

* 본인과 삼성화재해상보험(주)와의 대출약정에 의한 근저당권설정 이후 대출금 지급전에 실시한 전입세대조사 결과 미확인, 비임차, 임차 전입세대 등 상기내용과 다른 사실이 확인될 경우 대출이 불가함을 인지합니다. 이 경우 대출 과정에서 발생한 제비용(설정관련 제비용, 전입세대조사비 등)을 본인이 부담하겠습니다. 아울러 채무승계를 조건으로 한 담보부동산 매매시 사전 통보 및 회사의 승낙절차를 거쳐 피담보채무 범위를 재확정받아야 함을 인지합니다.

대출자는 다음 사항을 읽고 본인의사를 사실에 근거하여 자필로 기재하여 주세요.

1. 본인은 위 약관과 계약서상의 중요한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들었습니다.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2. 본인은 보험사여신거래기본약관과 이 계약서 사본을 수령하였습니다.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3. 대출실행일 전후 1개월내에 본인이 체결한 삼성화재 장기보험의 경우, 보험업법, 감독규정 등에서 금지하고 있는 구속성 보험(대출의 대가로 보험가입을 강요받아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체결된 보험)에 해당될 수 있다는 설명을 충분히 들었으며 아래 내용에 대해 확인합니다.	
① 본인은 대출실행일 전 1개월 이내에 체결한 삼성화재 장기보험 계약이 있습니다.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② 본인은 대출실행일 후 1개월 이내에 삼성화재 장기보험을 가입할 계획이 있습니다.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또한, 본인이 체결한 삼성화재 장기보험 계약은 보험업법 및 감독규정 등에서 금지하고 있는 구속성 보험에 해당이 없으며, [본인의 필요에 의해 자발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임]을 확인합니다.	

대출자 _____ (인)

대출상담사 설명확인서		
아래 각항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오른쪽 빈칸에 √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니오
1. 대출계약 체결전 대출상담사로부터 대출상품의 조건 및 내용 등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받으셨나요? - 대출계약 중요사항(금리, 대출금액, 대출기간, 중도상환수수료 등)에 대한 설명 포함		
2. 대출모집인은 회사의 업무위탁을 받아 대출모집 및 소개활동을 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고지받으셨나요?		
3. 대출관련하여 상담사로부터 별도의 중개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수취할 수 없다는 사실을 고지받으셨나요?		
4. 보험가입은 대출성사를 위한 기본 조건이 아니며 대출과 연계하여 권유받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		
5. 상담사로부터 여신심사 등을 통한 대출실행의 결정은 회사가 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고지받으셨나요?		
6. 상담사로부터 귀하의 소득, 재산, 부채, 신용 및 변제계획 등 고려, 적합한 대출상품을 권유받으셨나요?		
7. 상담사로부터 귀하가 필요한 자금범위를 초과하여 대출을 받도록 권유·유도받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		
8. 본 대출은 타인의 대출권유 등 대출시기와 무관하며 본인의 필요에 의한 대출임을 확인합니다.		
9. 대출 계약 체결 전 대출상담사로부터 청약철회권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받으셨나요? - 청약철회의 기한, 행사방법, 효과, 청약철회에 따른 이익과 불이익, 중도상환과의 차이 등		
10. 대출상담을 진행한 대출상담사 본인의 성명은 무엇인가요?		
* 위 각 사항에 대한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본인이 직접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인	(인)	대출상담사 (인)

규제지역 외 소재 주택 구입자금 대출시 본인의사를 사실에 근거하여 자필로 기재바랍니다.

규제지역 외 소재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목적의 대출거래를 함에 있어서 채무자 본인 및 채무자 본인이 속한 세대의 주택 보유여부를 회사에 고지하거나 회사가 확인을 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채무자 본인의 LTV 및 DTI 비율이 [10%p가 차감] 되는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 규제지역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그리고 조정대상지역을 말합니다.

수입인지 첨부란

대출금	• 5천만원이하: 면제	• 1억원이하: 7만원
	• 10억원이하: 15만원	• 10억원초과: 35만원

대한민국정부
인지세
서초세무서장
후 납승인
2016년 34017호

추가 약정서

주택 취득 제한 등에 대한 전세자금대출 추가약정용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앞

20 년 월 일

채무자 본인은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와 약정한 20 년 월 일자 대출거래약정서(가계용)에 추가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합니다.

제1조 (목적)

이 약정서는 전세자금대출 거래를 하기 위해 회사와 체결하는 추가 약정입니다.

제2조 (용어)

이 약정서에서 사용하는 주택의 주요 용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규제대상 아파트'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를 말합니다.

제3조 (기 보유 주택)

채무자 및 그 배우자(결혼예정자^{주1})를 포함. 이하 같음)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택(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은 제외되나, 잔금대출이 확인되는 경우는 포함. 이하 같음)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1) 3개월 이내에 결혼예정인 자에 한함.

종류	소유자	주소
----	-----	----

제4조 (주택취득 등 제한)

채무자 및 그 배우자가 본 대출기간 동안 2주택 이상을 취득하거나, 규제대상 아파트를 취득하지 않습니다.^{주2}

주2) 다만, 무주택자가 상속에 의한 규제대상 아파트를 취득하여 1주택자가 된 경우는 제외. 이하 같음

제5조 (주택보유수 확인)

- 최초 대출실행 시 국토교통부 주택소유확인시스템(이하 'HOMS'라 함)을 통해 채무자 및 배우자의 주택보유수를 확인합니다.
- 대출실행 후 관련 법령 등의 준수 및 정부정책 수행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채무자 및 배우자의 주택보유수를 HOMS를 통해 확인합니다.

제6조 (의무위반이 아닌 경우)

제5조에 따라 채무자 및 그 배우자가 대출기간 동안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도, 아래의 사유가 있는 경우 제4조를 위반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단, 2주택 이상을 취득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 채무자 및 그 배우자의 주택보유수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실과 관련된 자료(매매계약서 및 계약금 납부내역 등)를 회사에 제출하는 경우가. 취득한 주택이 규제대상 아파트인 경우로서 '20.7.9.까지 해당 아파트(분양권, 입주권 등 포함)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 취득한 규제대상 아파트 소재지역이 현재시점 이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로 신규 지정된 경우로서, 그 신규지정일 전까지 아파트(분양권, 입주권 등 포함)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제7조 (기한 전의 채무변제 의무)

아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 제7조 제4항 제2호에 의하여 본 대출의 기한의 이익은 상실하게 되고, 그에 따라 본 대출을 변제할 의무를 집니다.

- 제4조를 위반하여 본 대출 전액 상환 전에 2주택 이상을 취득하거나, 규제대상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

제8조 (기한 전의 채무변제 의무의 유예)

제7조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사유의 경우 제7조에 따른 기한의 이익 상실 및 본 대출 변제 의무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1. 무주택 가구가 본 대출기간 동안 규제대상 아파트를 취득한 것이 제5조에 따라 확인되는 경우
: 본 대출의 만기일자와 취득한 규제대상 아파트의 기존 임대차계약 만기일자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제9조 (여신거래 약정위반)

아래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본 대출 전액 상환여부와 관계없이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해당 채무자의 약정 위반사실이 제공되며 향후 3년간 금융기관^{주3)}의 주택 관련 대출^{주4)}이 제한됩니다. 단, 제8조에 따라 유예한 경우에는 유예기간까지 약정위반 대상으로 등록하지 않습니다.

주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항 제1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주4) 「은행업감독규정」〈별표6〉 제1호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자금대출 등

1. 제4조를 위반하여 본 대출 전액 상환 전에 2주택 이상을 취득하거나, 규제대상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

자필기재 본인(대출자)은 회사로부터 상기 추가 약정서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들었으며], 약정 위반 시 기한의 이익 상실, 향후 3년간 주택관련 대출 제한 등 불이익에 대해 [충분히 이해] 하였습니다.

채무자: _____ (인)

주 소: _____

전세자금대출 이용에 대한 안내 및 약속서

(2023.03.02. 이후 대출신청인용)

전세대출규제 시행일 이후 전세자금대출 거래를 함에 있어 적용되는 법령 등의 내용을 안내하기 위한 약속서 입니다.

	채무자 및 그 배우자(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 포함) 기준	
	무주택	1주택 보유
대출(연장)기간 동안 의무 사항 <small>* 취득 : 소유권 취득, 상속 제외</small>	① 2주택 이상 취득* 금지 ②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 취득 금지	
대출 연장시 유의 사항	· 대출 실행 이후 1주택을 신규 취득하여 대출 연장 시점까지 1주택을 보유한 경우 ⇒ <u>대출한도가 3억원으로 축소, 한도 초과시 초과된 대출금 즉시 상환</u>	-
의무 위반시 불이익	·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본 대출을 즉시 변제할 의무를 집니다. · 본 대출의 전액 상환여부와 관계없이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약정 위반 사실이 제공되며, 향후 3년간 금융기관의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됩니다.	

자 필 기 재	본인(채무자)은 전세자금대출 거래와 관련하여 대출(연장)기간 동안의 의무 사항에 대해 설명을 들었으며, 약정 위반 시 기한의 이익 상실, 향후 3년간 주택관련 대출 제한 등 불이익에 대해 충분히 이해 하였습니다.
------------------	--

20 년 월 일

채 무 자 : _____(인)

포괄위임장

20 년 월 일

임차인 겸 근질권설정자 또는 채권양도인	위임인 성명:	(인/서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근질권자 또는 채권양수인	금융기관: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대표이사 사장 이 문 화	(인)
	주소: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74길 14	

본인은 임대차목적물의 임차인으로서, 아래 행위 일체를 수임인에게 위임하는 것은 물론, 수임인이 위임 받은 업무를 적법 유효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행위(필요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제공하고 날인하는 행위 포함)에 적극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수임내용

-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근질권 설정(또는 채권양도) 통지 행위(승낙방식인 경우 '근질권설정승낙서(또는 채권양도승낙서) 및 임대차보증금 반환 약약서' 임대인 작성여부 확인 포함)
 - 근질권설정통지서 송달장소(승낙방식의 경우 기재 생략)

1	임대인 성명	연락처
	실수령 주소	
2	임대인 성명	연락처
	실수령 주소	

· 임대차 계약내용

임대차목적물 소재지			
임대차 보증금	금 원	월세	금 원

- 임대차계약기간 중에 임대인이 변경(매매나 증여 등)될 경우 신임대인에 대한 안내통지 행위
- 임대차목적물 경매시 임대차보증금의 배당금의 수령에 필요한 일체의 행위(배당이의 소송 등 경매절차에서 각종 이의 행위 포함)
- 기타 위와 관련한 일체의 행위

수임인(대리인)

- 상 호: 법무법인 신세기 (사업자등록번호: 130-81-45909)
- 전화번호: 02-6188-6628
- 주 소: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265, 대신빌딩 5층 (서초동 1717-6)